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화석연료 관련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금지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8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화석연료 관련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금지	3
※ 참고자료	8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8
2. 녹색기업 지정 평가서 예시	11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1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화석연료 관련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금지

현행법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 ----- ----- ----- ----- ----- ----- . 이 경우 석탄, <u>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u> <u>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u>

현행	개정안
② ~ ⑥ (생략)	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16조의2¹⁾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거나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짐.

[녹색기업 지정 현황]

년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9
기업수	195	179	164	152	139	131	123	111	103	97	97

※ 출처: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의 평가 기준은 공통지표(정성지표, 정량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되며,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녹색경영체제 등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데²⁾,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점 수	
			대기업	중소기업
총점		-	700점	600점
공통지표	정성지표	녹색경영체계	100점	140점
		자원·에너지	80점	8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³⁾	140점	150점
		사회적 책임	70점	30점
	정량지표	자원·에너지	120점	11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⁴⁾	120점	90점
		사회적 책임	20점	-
특성지표		-	50점	-

* 총점의 80%(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출처: 환경부

2)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참고자료2. 녹색기업 지정 평가서 예시(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별표 4.-대기업) 참조

3)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인벤토리 구축, 저감 투자 및 효과분석 등을 평가(참고자료2. 녹색기업 지정 평가서 예시)

4)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의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등을 평가(참고자료2. 녹색기업 지정 평가서 예시)

현행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 원단위 개선율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녹색기업 적합 여부 심사시에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일부에 대한 배출농도 측정을 제외⁵⁾하고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 규모에 대한 평가 항목이 부재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더라도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이 제한되는 업종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4년 10월말 기준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8개소의 발전 사업자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

- 5)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녹색기업 심사) ①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50% 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녹색기업 신청서류가 적합할 것
-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각 호 가목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체제구축현황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 현황]

(2024.10월말 기준)

업체명	사용중인 화석연료	최초지정일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발전본부	천연가스	1999.02.04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천연가스, 유류	2003.03.21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천연가스	1999.09.17
한국동서발전(주) 일산발전본부	천연가스	1996.01.03
한국동서발전(주) 울산발전본부	천연가스	2004.04.14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	석탄(무연탄)	2001.11.27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천연가스	2004.10.26
GS파워(주) 안양열병합발전처	천연가스	2004.03.15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기업을 원천적으로 녹색기업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장려수단이 사라지게 되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온실가스 발생량 등을 현저히 감축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천연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22.12)」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중 전환부문⁶⁾에 해당되므로, 천연가스 기반 사업장은 녹색기업 지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됨.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5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임.

※ 참고자료

1.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 **(대상)**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정(3년 간)

□ **(운영체계)**

- 환경부·환경청·환경산업기술원 중심 제도 운영
- 전국녹색기업협의회*에서 녹색기업 총회·간담회 등 개최

* 기업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녹색기업 자치조직으로, '97년 지역별 협의회 구성 및 '01년 전국 협의회 창립

구분	환경부	환경청 *수도권대기청 제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국녹색기업 협의회
담당 업무	○ 운영 총괄 및 규정 개정 등	○ 녹색기업 심사 ○ 지정 및 지정 취소 ○ 변경 및 사후관리	○ 녹색경영보고서 검토 ○ 우수녹색기업 시상 ○ 녹색기업 제도 홍보 ○ 녹색기업 간담회 개최 등	○ 총회·워크숍 및 간담회 등 개최 ○ 의견수렴·제도 주요사항 전파

□ **(현황)** 97개소('24.9.), 대·중견기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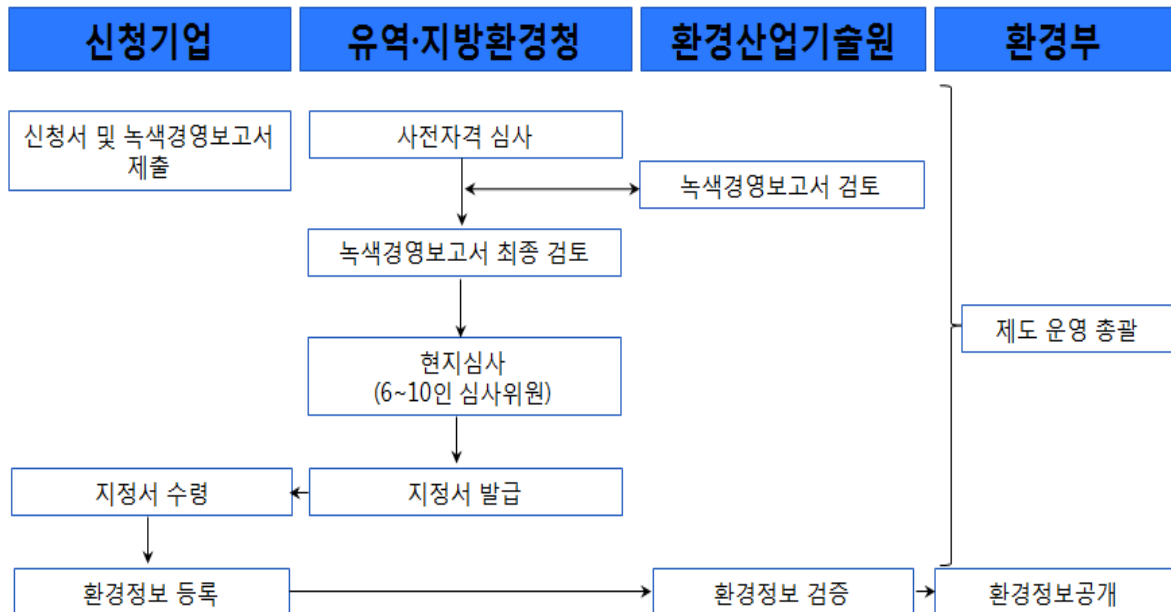
- 녹색기업 수는 '11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9
기업수	210	204	202	195	179	164	152	139	131	123	111	103	97	97

□ **(경과)**

- '1995.4 환경친화기업 출범(환경관리모범업소 폐지 → 환경친화기업)
- '2010.4 녹색기업 출범(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 명칭 변경)
- '2014.1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환경부장관 → 환경청장)

□ (운영방식)



- (지정절차) 기업으로부터 신청서·녹색경영보고서 접수 시 환경청에서 적합 여부 평가(시행령 제22조의7, 시행규칙 제33조의4, 운영규정 제6조)

1.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등
2.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3. 과거 3년간 녹색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4.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 ▶ 적합한 경우 환경청장이 녹색경영보고서 검토·평가 실시
- ▶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의 녹색경영보고서 검토를 기술원장에 의뢰
- ▶ 기술원장은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 제출
- ▶ 보완사항은 기업에 요구 및 수정 보고서 접수·재검토
- ▶ 환경청장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이면 녹색기업 심사단 구성하여 현지조사 및 타 항목 평가 실시
- ▶ 최종평가 결과 점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 녹색기업으로 지정

- **(지정기준)** 평가항목은 업종에 따라 공통·특성지표로, 평가방법에 따라 정성·정량지표로 구분, 총점의 80%(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환경부고시 제2024-28호

<녹색기업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점 수	
			대기업	중소기업
공통지표	정성지표	녹색경영체계	100점	140점
		자원·에너지	80점	8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140점	150점
		사회적 책임	70점	30점
	정량지표	자원·에너지	120점	11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120점	90점
		사회적 책임	20점	-
특성지표		-	50점	-
총점		-	700점	600점
지정기준(총점의 80%)		-	560점	480점

- **(재지정)** 지정기간(3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재지정 기간 3년)
- **(지정취소)** 환경청장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되, 경미한 위반(개선명령·조치명령)인 경우 지정취소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는 필수사항이 아님

- **(인센티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5항 및 제6항
 -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오염원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보고,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 검사 면제(대가·수질·폐기물 등)
 - 녹색기업 협력사업·환경개선 관련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등

2. 녹색기업 지정 평가서 예시(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별표4. 대기업)

가. 녹색경영 성과(공통지표)

1) 정성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 녹색 경영 체계 (100점)	전사적 녹색경영 비전 수립 및 경영자 의지	- 내외부 환경변화 및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분석 -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에 대한 경영층의 관심 및 대내외 공표 -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의 주기적 검토	1~8	9~17	18~23	24~26	27~30	
	녹색경영 추진 조직 및 책임과 권한	- 녹색경영 업무 담당자 및 조직 구성 -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할, 책임, 권한의 구체성	1~5	6~11	12~15	16~17	18~20	
	녹색경영 인식 확산 및 교육훈련	- 녹색경영 교육 및 캠페인 계획 수립 - 녹색경영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녹색경영 교육 및 캠페인 결과·효과 성 파악	1~5	6~11	12~15	16~17	18~20	
	조직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 조직내 녹색경영 정보 공유를 위한 의사 소통 절차 - 녹색경영정보의 전달, 대응, 피드백의 신속성	1~2	3~4	5~6	7~8	9~10	
	녹색경영활동 모니터링 및 조치	- 녹색경영활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자 검토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포상	1~5	6~11	12~15	16~17	18~20	
(2) 자원· 에너지 (80점)	투입, 배출물질에 대한 물질수지 관리 활동	- 물질수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 - 전체 사업장/단위공정/제품별 물질수지 분석 - 물질수지 분석 결과의 활용	1~2	3~4	5~6	7~8	9~10	
	용수 사용 현황 및 절감 활동	- 용수 사용량 저감 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 용수 사용량 측정 및 추이 분석 - 용수 사용량 절감을 위한 공정, 시설의 적정관리 - 용수 사용량 절감 투자 및 효과 분석	1~5	6~11	12~15	16~17	18~20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저감 활동	- 폐기물 발생량 절감 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 폐기물 발생량 측정 및 추이 분석 - 폐기물 발생량 절감을 위한 공정, 시 설의 적정관리 - 폐기물 발생량 절감 투자 및 효과 분석	1~5	6~11	12~15	16~17	18~20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절감 활동	-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추이 분석 -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공정, 시설의 적정관리 - 에너지 사용량 절감 투자 및 효과 분석	1~5	6~11	12~15	16~17	18~20	
	신재생 에너지 적용 활동	신재생 에너지 도입 여부 및 적용 수준	1~2	3~4	5~6	7~8	9~10	
(3) 온실 가스 · 환경 오염 (140점)	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 환경사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 - 환경사고 대응 훈련 실시 - 훈련결과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대응 체계, 시나리오 등)	1~5	6~11	12~15	16~17	18~20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저감 활동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추이 분석 -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효과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검증	1~5	6~11	12~15	16~17	18~20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저감 활동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분석(주요공정, 배출시설 등) -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및 계획 수립 -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표준화 및 적정 운영 - 대기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효과 분석(방지시설, 공정, 제품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 및 추이 분석	1~8	9~17	18~23	24~26	27~30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저감 활동	-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분석(주요공정, 배출시설 등) - 수질오염물질 저감 목표 및 계획 수립 -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 표준화 및 적정 운영 - 수질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효과 분석(방지시설, 공정, 제품 등)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 및 추이 분석	1~8	9~17	18~23	24~26	27~30	
	유해화학물질 사용현황 및 저감 활동	- 유해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파악 및 인벤토리 구축 - 유해화학물질 저감 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동량·사용량 모니터링 및 추이 분석 - 유해화학물질 저감 투자 및 효과 분석	1~5	6~11	12~15	16~17	18~20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토양·지하수 관리현황 및 오염방지 활동	-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 파악 - 토양·지하수 오염물질 종류 및 오염도 모니터링 - 토양·지하수 오염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저감, 복원, 예방 등)	1~2	3~4	5~6	7~8	9~10	
	소음·진동·악취 관리현황 및 저감 활동	- 소음·진동·악취 유발 공정 및 시설 현황 파악 - 소음·진동·악취 모니터링 - 소음·진동·악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저감, 차단, 예방 등)	1~2	3~4	5~6	7~8	9~10	
(4) 사회적 책임 (70점)	녹색경영 정보 공개	- 녹색경영정보 공개 계획 수립 - 녹색경영정보 공개 수준 - 녹색경영정보 공개 방법	1~4	5~8	9~11	12~13	14~15	
	환경법규 준수	- 해당 환경법규 파악 - 환경법규 제·개정사항 모니터링 - 환경법규 준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조치 현황	1~8	9~17	18~23	24~26	27~30	
	협력사 환경성 관리 및 녹색경영 지원	- 협력사 환경성 관리 활동 - 환경성 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부여 - 협력사 녹색경영 지원 활동	1~4	5~8	9~11	12~13	14~15	
	사회공헌 활동	- 녹색경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캠페인, 시설 운영 현황 -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 - 지역사회 유관 기업의 환경지원 현황	1~2	3~4	5~6	7~8	9~10	

2) 정량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1) 자원·에너지 (120점)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2) 온실 가스 · 환경 오염 (120점)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3) 사회적 책임 (20점)	녹색구매 실적 개선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2	4	6	8	10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재 지정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2	4	6	8	10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 기준연도 :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규 지정은 최근 3년, 재지정은 전기 지정기간

※ 지정연도 : 신규 또는 재지정 시 향후 지정기간